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체정보를 민감정보 유형으로 명시〉

■ 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80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생체정보를 민감정보 유형으로 명시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희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8. 6.
3. 회 부 일 : 2024. 8.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Ⅲ. 검토의견: 생체정보를 민감정보 유형으로 명시

- 개정안은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민감정보 유형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1항 본문).

현행	개정안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 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u>성생활</u>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 ----- --- <u>성생활,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u>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약칭하고,

○ 시행령¹⁾에서는 ①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② 범죄경력자료, ③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²⁾, ④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경우 수집 및 이용, 제공 등을 위한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나(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등),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한편, 「출입국관리법」³⁾ 및 「항공보안법」⁴⁾ 등에서 ‘생체정보’의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2) 2020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생체인식정보 유출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임.

3)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15. “생체정보”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민의 출국) ①·② (생략)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4) 「항공보안법」

제14조의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생체정보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거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생체인식정보’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생체정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다수의 개별 법령에서 다양한 용어로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생체정보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생체정보는 그 특수성⁵⁾으로 인해 오·남용 및 유출 시 다른 개인정보보다 파급효과가 크고, 생체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실리콘 인공지문, 캡처된 얼굴·홍채 사진 등 위변조된 생체인식정보를 이용한 해킹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생체정보 유출 및 위·변조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생체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여야 한다.

5) 생체정보는 그 자체로 식별이 가능하고(유일성), 변경이 불가능함(불변성)

□ 다만,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생체정보의 개념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되나, 개정안에 따른 생체정보의 개념이 현행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민감정보인 생체정보의 개념과 차이가 있어, 민감정보의 범위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보다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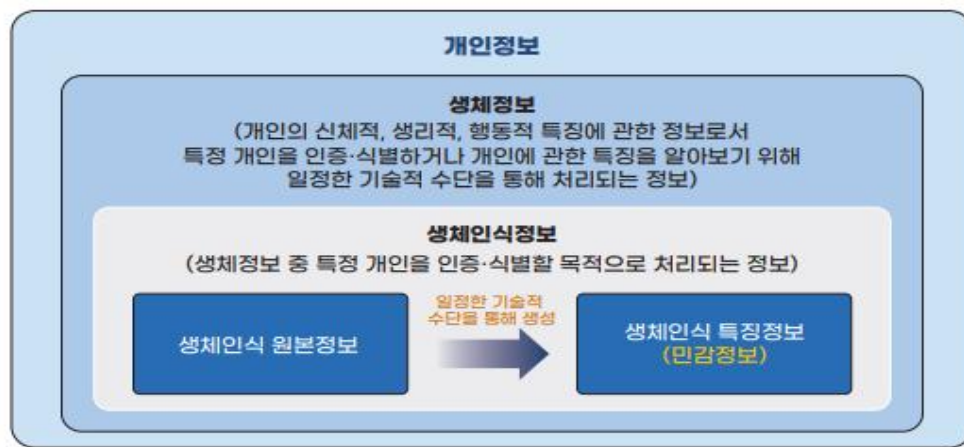
○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고시 및 가이드라인 등은 생체정보를 ① 인증·식별 목적 여부, ② 기술적 수단을 통한 처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정보’로 구분하고,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차등하여 규율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생체정보’란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이며,

- ‘생체정보’ 중 ‘생체인식정보’는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로, 인증·식별 목적이 아닌, 개인에 관한 특징(연령·성별·감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처리되는 ‘일반적인 생체정보’와 구분됨.

- 또한, ‘생체인식정보’는 ‘생체인식 원본정보⁶⁾’와 ‘생체인식 특징정보⁷⁾’로 구분되는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생체인식정보 중 인권 침해 우려가 현저히 높은 ‘생체인식 특징정보’⁸⁾만을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생체정보의 구분]



구 분	정 의	
개인정보	그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생체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연령·성별·감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	
생체인식정보	생체인식 원본정보	생체인식정보 중 입력장치 등을 통해 수집·입력된 특징정보 생성에 이용되는 정보
	생체인식 특징정보	원본정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의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자료: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 목적으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수집·입력된, 특징정보 생성에 이용되는 정보

7) 원본정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의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 개정안은 「항공보안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 체계에서 ‘일반 개인정보’에 해당함.

○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해야 할 실익이 적거나 어려운 정보까지 민감정보에 포함하는 등 민감정보의 범위를 현행보다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대로 법률에서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명시하되, 민감정보의 범위가 현재보다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현행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규정된 개념⁹⁾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4

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